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1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20년 11월 12일
- 나. 발 의 자: 고기관·정선희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0년 11월 19일
- 라. 상정일자: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0. 12.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선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구민이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헌혈추진협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제10조)

○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협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 ~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안건은 구민이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헌혈사업을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헌혈추진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는 헌혈추진협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회는 지역사회에서 헌혈에 의한 혈액 확보라는 공공 가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는 협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헌혈 장려와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협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우리나라의 혈액공급은 단체헌혈에 의존하고 있으며,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홍보부족으로 헌혈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고, 특정한 연령층과 일부 직업에 종사하는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헌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영등포구 헌혈추진협회를 구성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향후 헌혈추진협의회가 헌혈기부문화 형성을 통한 혈액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기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92호
----------	-------

발의년월일: 2020년 11월 일

발 의 자: 고기관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구민이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9조 ~ 제10조)
- 나.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
(안 제11조 ~ 제13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 제4조의4
-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0.11.13. ~ 11.17.):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구민의 헌혈”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구민의 헌혈”로 한다.

제3조 중 “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방안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제4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혈액관리 법시행령</u> 」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고자 <u>구민의 헌혈</u> 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혈액관리 법</u> 」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u>제2조제2항</u> ----- -- <u>헌혈추진협의회</u> 를 구성하고 구 <u>민의 헌혈</u> -----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u>영등포구 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 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u>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청장</u> ----- ----- ----- -----.
<u>〈신 설〉</u>	제9조(<u>헌혈추진협의회</u> 의 구성) ① <u>「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u> <u>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u> <u>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u> <u>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u> <u>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u> <u>를 구성할 수 있다.</u> ② <u>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u> <u>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u> <u>위원으로 구성한다.</u>

〈신 설〉

③ 협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

〈신 설〉

〈신 설〉

장 및 장려 방안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제4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
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신 설〉

제9조、제10조 (생 략)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회의의 운영) ① 협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제15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